

---

# 「평택에코센터」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 단가계약용역 과업지시서

---

2019. 12.

평택이오스 주식회사

## 1. 적용범위

본 과업지시서는 평택에코센터 SRF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[코드번호 51-08-04](이하 "폐기물" 이라 한다.)을 위탁처리 용역으로서 본 과업 지시서에 정한 사항은 위탁용역처리 관련 계약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## 2. 목 적

본 과업지시서는 평택에코센터 SRF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,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업 허가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적법하게 위탁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3. 위탁처리 개요

- 가. 용역명 : 평택에코센터 수집·운반 및 처리 단가용역
- 나. 발생위치 : 평택에코센터내 SRF사용시설(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64-8 일원)
- 다. 처리대상 : 바닥재[51-08-04]
- 라. 운반방식 : 암롤(arm roll)
- 마. 용역범위 :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·운반(상차) 및 처리

## 4. 계약예정 물량 및 기간

- 가. 계약물량 : 폐기물 800톤/년
- 나. 계약기간 : 운영개시일로부터 ~ 2020. 12. 31. 까지
- 다. 계약물량 및 기간은 추정치로서 평택에코센터 SRF사용시설의 운영조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운영상 변동이 있을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라. 폐기물의 위탁처리 용역은 톤(TON)당 단가계약으로 한다.

## 5. 위탁처리 범위

- 가. 작업범위  
평택에코센터 SRF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및 처리업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

나. 상차작업 및 청소

상차 작업 시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, 누설 시에는 즉시 주변정리(청소)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다. 계 량

폐기물 계량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.

마.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(올바로시스템)

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, 제2항, 제18조 제3항, 제2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적법처리 올바로시스템(<http://www.allbaro.or.kr>)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. 또한 "전자정보프로그램"을 이용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 등 처리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.

## 용역 계약 특수조건

본 계약은 평택이오스 주식회사(이하 "계약자"이라 한다)와 계약상대자(이하 "계약상대자"이라 한다)간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및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분쟁과 이견을 최소화하고, 계약조건의 명확함을 기하기 위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의 특수조건을 설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"계약자"와 "계약상대자"은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 용역 계약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용역에 대한 명확함을 기함으로써 상호간 이견을 최소화하고자 본 특수계약조건을 맺는다.

**제2조(범위)** 본 계약의 범위는 "계약상대자"가 계약기간 중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이상 없이 처리하기까지의 일체를 말한다.

### 제3조(용역수행 준수사항)

- ① "계약상대자"는 "계약자"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"계약상대자"는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③ "계약상대자"가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및 처리 시 발생하는 민원이나 행정처분 등은 "계약상대자"의 책임이며, "계약상대자"은 민원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"계약자"에게 고통분담 등 어떠한 요구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"계약상대자"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상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"계약자"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"계약상대자"가 책임을 진다.
- ⑤ "계약상대자"는 폐기물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 시 "계약자"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·형사상 책임은 "계약상대자"가 진다.
- ⑥ "계약상대자"의 사정으로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지 못하여 "계약자"의 사업장에 장기 보관 등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

을 경우 "계약상대자"는 전액 보상하여야 하며, "계약자"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⑦ "계약상대자"는 "계약자"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"계약자"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언제든지 반입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.

⑧ "계약상대자"는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"계약자"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시설물관리에 유의하고 시설물파손 및 변형이 있을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⑨ "계약상대자"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용역처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"계약자"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(세부계획서에는 차량제원·차량등록증·처리자 및 운반자 인적사항·허가증·기타 용역에 관련한 제반사항들)

#### **제4조(대금의 청구)**

① "계약상대자"는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용역 수수료는 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한 계근전표를 종합하여 정산한다.

②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용역 비용은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초에 "계약상대자"가 청구하여야 한다.

#### **제5조(안전관리 및 손해배상)**

① "계약상대자"는 수집·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② "계약상대자"는 수집·운반과정에서 "계약자"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③ "계약상대자"는 수집·운반 및 처리와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.

④ 계약과 관련하여 "계약상대자"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"계약상대자"에게 귀속한다.

⑤ "계약상대자"는 수집·운반과정에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, 주변오염으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은 "계약상대자"에게 귀속된다.

⑥ "계약상대자"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본 용역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여 "계약

자"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"계약자"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"계약상대자"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.

### **제6조(계약의 해지)**

① "계약상대자"는 본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3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"계약자"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"계약상대자"는 폐기물 운반 시 "계약자"에서 지시하는 계량대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계량을 하고 "전자인계서"를 작성하여 처리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계량한 경우 민.형사상 고발과 함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7조(서류제출 및 요구)** "계약상대자"는 처리업체의 계량전표를 월별로 보관하여 "계약자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행정사항)**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한다.

**제9조(상호협조)** "계약상대자"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"계약자"와 협의하여 수행하며, 이 경우 "계약상대자"은 "계약자"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.

**제10조(비밀보장)** "계약상대자"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"계약자"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.

**제11조(양도금지)** "계약상대자"는 "계약자"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권리, 이윤, 이익관계,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, 하청,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.

**제12조(기타)** "계약상대자"의 귀책사유로 수집·운반 및 처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"계약상대자"는 사전에 "계약자"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"계약자"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